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사고를 당해도 안심할 수 있어요!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 개정에 따라 '17.1.8부터 시행중인 보험으로, 15층 이하 아파트의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합니다.



15층 이하 아파트 의무가입

- 「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 주택*에 한정한다) 및 부속건물
-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가입시기

- 신규 15층 이하 아파트 : 시설 사용 개시전 가입



1인당 1억 5천만원 까지 1사고당 10억원 까지 보장

- 1가구 면적 100㎡기준, 세대당 연간보험료 920원
 - 1가구 면적 165㎡기준, 세대당 연간보험료 1,530원
※ 단, 보험료는 각 보험사가 운영하는 특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아파트 거주민 및 방문객 등
- 제3자 인명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원 까지 (사고당무한)
제3자 재산피해는 1사고 당 10억원 까지 보장
- ※ 원인불명의 화재, 폭발, 붕괴 손해도 보장
- 아파트 202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다른 층(호)에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
- ※ 공동시설(보일러실 등)에서 발생한 사고 포함



미가입시 과태료 최고 300만원

-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 '18. 8. 31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가입의무 위반 기간	과 태 료
30일 이하	30만원
30일 초과 60일 이하	30만원 + 31일째부터 1일당 3만원
60일 초과	120만원 + 61일째부터 1일당 6만원



특수건물·임대아파트(공공·민간포함)나 국·공유시설에 있는 15층 이하 아파트는 가입 제외

-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가 있는 국·공유시설인 15층 이하 아파트
- 「공공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 아파트 및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아파트
- 공동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함께 있는 혼합단지 내 임대아파트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체손해배상 특약부화재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특수건물

특수건물

16층 이상 아파트(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 단지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



단지내 1개 동이란도 16층 이상이면
단지 전체가 특수건물



자주 묻는 질문

- 재난배상책임보험과 일반적인 화재보험과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은 보험가입자 자신이 화재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는 보험을 말하는 반면 재난보험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즉, 화재보험은 자기의 손해, 재난보험은 타인의 손해 보상이 주목적입니다.

- 화재·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보상한도* 및 담보 범위 등이 달라 가입해야 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 유지 시에는 중복되는 보험료가 할인되고,
해약할 경우에는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환급이 가능합니다.
* 화재·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는 대인에 대해 사고당 보상한도액을 정하고 있으나,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사고당 무한



[배상책임보험 약관 예시] 제9조(의무보험과의 관계)

-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가입 문의전화

* 가입 전 궁금하신 사항은 콜센터(☎02-3702-8500)로 전화주세요.



1566-7711



1588-5656



한화손해보험

1566-8000



1544-0114



롯데손해보험

1588-3344



1588-0100

Heungkuk
Life Insurance

1688-1688



1566-3000



삼성화재

1588-5114



1644-9000



수협

1588-4119



1544-3030



MG 새마을금고

1599-9010



1588-5959



행정안전부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사고를 당해도 안심할 수 있어요!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 개정에 따라 '17.1.8 부터 시행중인 보험으로, 15층 이하 아파트의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합니다.

* 2020년 1월 7일부터 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15층이하 임대 공동주택 및 연립·다세대주택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15층 이하 아파트 의무가입

-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 관리 대상 공동 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주택 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 관리하여야 하는 임대주택에 한정한다) 및 부속건물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공동주택(확대대상 포함)>

- 300세대 이상의 분양·임대 공동주택 포함
-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분양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집중식(지역난방방식)의 분양 공동주택
- 세대수와 상관없이 승강기가 설치된 없지만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으로 운영되는 임대 공동주택



가입시기

- 신규 15층 이하 아파트 : 시설 사용 개시전 가입
- '20. 1. 7. 확대 공동주택 : 보험가입 유예 특례기간(~'20. 7. 6.)까지

* 보험가입은 2020년 1월 7일부터 가능



1인당 1억 5천만원 까지
1사고당 10억원 까지 보장

- 공동주택 거주민 및 방문객 등
제3자 인명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원 까지 (사고당 무한)
- 제3자 재산피해는 1사고 당 10억원 까지 보장
- * 원인불명의 화재, 폭발, 붕괴 손해도 보장

아파트 202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다른 층(호)에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
※ 공동시설(보일러실 등)에서 발생한 사고 포함



미가입시 과태료 최고 300만원

-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가입의무 위반 기간	과태료
30일 이하	30만원
30일 초과 60일 이하	30만원 + 31일째부터 1일당 3만원
60일 초과	120만원 + 61일째부터 1일당 6만원



특수건물이나 국·공유시설에 있는 15층 이하 공동주택은 가입 제외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체손해배상 특약부화재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특수건물



특수건물

16층 이상 아파트(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 단지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

단지내 1개 동이라도 16층 이상이면
단지 전체가 특수건물

FAQ

자주 묻는 질문

- 재난배상책임보험과 일반적인 화재보험과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은 보험가입자 자신이 화재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는 보험을 말하는 반면 재난보험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즉, 화재보험은 자기의 손해, 재난보험은 타인의 손해 보상이 주목적입니다.

- 화재·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보상한도* 및 담보 범위 등이 달라 가입해야 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 유지 시에는 중복되는 보험료가 할인되고,
해약할 경우에는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환급이 가능합니다.

* 화재·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는 대인에 대해 사고당 보상한도액을 정하고 있으나,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사고당 무한



[배상책임보험 약관 예시] 제9조(의무보험과의 관계)

-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가입 문의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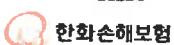
* 가입 전 궁금하신 사항은 콜센터(☎02-3702-8500)로 전화주세요.



1566-7711



1588-5656



1566-8000



1544-0114



1588-3344



1588-0100



1688-1688



1566-3000



1588-5114



1644-9000



1588-4119



1544-3030



1599-9010



1588-5959

인터넷 직접가입 보험상품

* 취급보험사 : 농협손해보험, MG손해보험

* 가입방법 : 농협손해보험(www.nhfir.co.kr) 또는 MG손해보험(www.instip.co.kr) 접속하여 가입

- 준비할 사항 : 개인정보 및 목적물 정보, 시설고유번호, 개인인증서, 보험료 지불수단(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입) 등

* 주요특징 : 365일 연중무휴 보험가입 가능



행정안전부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재난배상책임보험M/V

